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306조제5항 관련)

| 위반행위 또는 사유   | 해당 법 조문          | 처분내용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 | 법 제125조제5항제 1호   | 조종자증명 취소  |
| 2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| 법 제125조제5항제 2호   | 가. 벌금 100만원 미만 : 효력정지 30일<br>나.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: 효력정지 50일<br>다. 벌금 200만원 이상 : 조종자 증명 취소 |
| 3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<br>가.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<br>나.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<br>다.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| 법 제125조제5항제 3호   | 조종자증명 취소<br>효력 정지 90일<br>효력 정지 30일  |
| 4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<br>가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<br>나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<br>다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| 법 제125조제5항제 3호   | 효력 정지 180일<br>효력 정지 90일<br>효력 정지 30일  |
| 5.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 | 법 제125조제5항제 3호의2 | 조종자 증명 취소   |
| 6.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   | 법 제125조제5항제 3호의3 | 조종자 증명 취소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선한 경우</p> <p>가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</p> <p>나.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p>6의2. 법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</p>   | <p>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4</p> | 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p>  |
| <p>7.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p>  | <p>법 제125조제5항제4호</p>   | 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p>  |
| <p>8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</p>   | <p>법 제125조제5항제5호</p>   | 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혈중알콜농도 0.02퍼센트 이상 0.06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- 혈중알콜농도 0.06퍼센트 이상 0.09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- 혈중알콜농도 0.09퍼센트 이상: 효력 정지 180일</li> </ul>  |
| <p>9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</p>  | <p>법 제125조제5항제6호</p>   | <p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-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-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li> </ul> 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혈중알콜농도 0.02퍼센트 이상 0.06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- 혈중알콜농도 0.06퍼센트 이상 0.09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/li> </ul>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10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 | <p>법 제125조제5항제 7호</p> | <p>- 혈중알콜농도 0.09퍼센트 이상: 효력 정지 180일<br/> 나. 미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br/> -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/> -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/> -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br/> 조종자증명 취소</p> |
| <p>11.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</p>  | <p>법 제125조제5항제 8호</p> | <p>조종자증명 취소</p>   |

비고

1. 처분의 구분

- 가. 조종자증명 취소: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효력 정지: 일정기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2.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3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가. 가중할 수 있는 경우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과거 효력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

나. 감경할 수 있는 경우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